가족·아동·장애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Welfare Services for Children, Families, and the Disabled: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김유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가족정책연구팀장

류정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변용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고는 가족·아동·장애인복지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가족정책에서는 가족기능 약화 문제에 대응하여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가족이 처한 상황과 욕구에 부합되는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아동복지정책에서는 학대아동, 방임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의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이 요청된다. 장애인복지정책에서는 생애주기의 각 단계별 필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요청된다.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한국 사회는 가족·아동·장애인복지 분 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가족 분야에 서는 산업화 및 후기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소가족 화 및 핵가족화 등 가족 규모의 축소와 세대 구성 의 단순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직계가족의 비 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비해 핵가족의 비중 은 증가할 전망이며 1인가구의 증가세 또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족의 사회구성원 충원 기능은 물론 가족돌봄 기능 약화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맞벌이 가구의 보편화가 증대되고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이혼증가 및 결혼이민자 인구 증가 등으로 가족형태의 다양성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가족이 처한 상황과 욕구에 부합되는 맞춤형 지원

정책 모색과 잠재적인 문제 예방을 통해 가족역량 제고와 사회통합이 요구되고 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인천, 부천에서 연달아 발 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 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위기아동 보호시스 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까지도 아동 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정책대상으로 존 재해 왔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사회적 주목을 받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 안 마련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되는 악순환을 반 복해 오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다양한 사회 적 위기에 직면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점검을 통 해 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를 개선하고 확립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장애인복지 분야의 경우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 다임으로의 전환 등 장애인복지 환경 변화에 따라 장애인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활 동지원제도, 장애인연금제도, 발달장애인지원법 등 장애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장애인의 자립생 활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었으 나 미흡한 욕구 충족을 위한 제도 확충 및 내실화 가 필요한 상황이다.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후 속 조치 또한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발 달장애인법 제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익보장 과 복지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이 부여되고 있 으나, 현재까지 지원서비스 및 체계가 선언적 수준 에서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책방향과 과제들 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가족·아동·장애인복지 환경이 크게 변화 되는 상황에서 본고는 2016년 가족, 아동복지, 장 애인복지 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하 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가족정책, 아 동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으로 구분하여 각 정 책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각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가족정책의 현황 및 과제

가. 현황과 문제점

우리사회의 가족정책기조는 '선가정 후사회'로 가정이 먼저 문제해결을 하고, 그 이후 문제가 발 생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하는 상 당히 선별적인 가족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가족해체와 저출산, 여성취업 활성화 및 돌봄 공백 등의 신사회위험이 야기되고 가족에 대한 관심과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4 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가족정책이 명시 적인 하나의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 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명시하는 가족정책은 문 제가족에 대한 사후치료적 접근과 사전 예방적 관 점에서 가족 건강성과 역량강화를 주요한 정책목 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가족정책은 문 제가족을 위한 사후치료부터 보편적 가족을 위한 사전예방적 관점을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이고 광 범위한 정책영역이라 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1차 건 강가정기본계획(2006~2010)은 가족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통합적 가족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가족정책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후 수립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은 보편적 가족의 가족위기 예방 및 가족의건강성 증진, 가족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가족가치확산을 주요 과제로 부각시키고, 육아의 주체로서'가족-지역사회-국가'의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가족정책의 영역과 주체를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로 확대하고 이들 간의 상호책임성과 파트너쉽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2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주요 가족 정책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면 다음과 같다. 가 족가치 확산 정책으로 가족문화 개선을 위한 교 육·홍보, 가족관계 관련 법령 개선, 다양한 가족여 가 프로그램 개발·보급, 가족과 지역사회 소통·연 대 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를 위해 휴직·휴가제도 활성화와 아버지교육 및 아버지 학교 참여 등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이 가족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는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4년 육아휴직자 76,833명 중에서 남성은 3,421명으로 그 비율은 4.5%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¹⁾. 그리고 15~64세 기혼가구 남성의양육과 가사분담 방법은 부인부담이 88%, 부부가반씩 부담이 1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²⁾.

자녀돌봄 지원정책으로 보육·교육비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취학 전 5세아, 셋째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2011년 이후 다문화가족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돌봄지원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부모 자녀돌봄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부모 중심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하였다. 2011년부터 영아종일돌봄 지원은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시설 양육서비스 미이용자에 대한 비용지원인 양육수당 대상을 만5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표 1.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수준
보육료·유아학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모든 영유아	만 5세 이하 영유아(0~84개월 미만)	취학전 12개월 미만: 20만원 미만 취학전 24개월 미만: 15만원 취학전 24개월 이상~84개월 미만: 1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15). 내부자료.

¹⁾ 고용노동부(2014). 내부자료.

²⁾ 김승화, 김유경 외 7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555-556.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 돌봄망으로 2014년 기준으로 전국 39 개 시군구에서 84개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취학 전·후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돌봄 장소 제공과 육아정보 및 정보나눔 기회를 제공한 다. 또한 가족품앗이 지원을 하는데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놀이, 체 험활동. 등하교 안심동행 품앗이 등 자녀돌봄의 공 백을 지원하고 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나홀로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는 2015년 23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초등학 교까지 엄마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온종일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제공되는 양 육수당은 자녀양육비용 부담 경감측면에서 실효성 이 떨어지며, 지역사회 돌봄망 및 방과후 돌봄서비 스는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표준화된 프로그 램 부재와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도출되고 있다.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지원정 책은 다음과 같다. 2015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 정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자산형성계좌를 신 설하는 한편, 복지급여를 다양화하였다. 한부모가 족의 자립기반으로 복지급여 압류방지 통장을 개

설하고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자 산형성계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와 조선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지원되며,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비. 그리고 자립지원 촉진수당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도 사업운영자금으로 최대 2천만원, 창업자금으로 최대 7천만원으로 확대하였다. 한부 모가족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자활가능 한부모가 족을 대상으로 empowering과 욕구에 역점을 둔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하며, 2015년 7개 건 강가정지원센터에서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 지원사업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자녀양육비 지원 이행확보를 위해 법·제도 마련과 법률지원 서비스 가 제공되고 있다. 이혼과정 및 이혼가족을 대상으 로 가정상담 및 치유기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 문화와 맞벌이 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 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지 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15년 315개 소로 확대하고 한국어 교육 및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부터 종합고용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여 적합직종 발굴 및 '결혼이민자 진로 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직업능력

표 2, 레인보우 스쿨(Rainbow School) 교육대상, 과정 및 내용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내용
만 9~24세 외국출신 청소년	전일제(주5일, 4개월), 방과후 과정, 여름과정, 주말과정	한국어, 한국생활문화, 정체성, 편입학 및 진로지도, 취업연계 등

자료: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개발계좌를 운영하고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과 내일배움 카드제 및 고용서비스 인턴 등 맞춤형 일 자리 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성년자녀를 양육 하는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 보장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 로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언어지도사 배치 및 방문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학교생활 초 기적응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프로그램과 예비 학교, '자녀생활서비스', '레인보우 스쿨(Rainbow School)'을 운영하고 있다.

대다수 한부모정책은 단편적인 경제적 지원에 편중되어 있고, 자립·자활에 필요한 정서·심리적 문제 해소, 활발한 경제사회활동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 다문화가족정책은 초기적응에 편중되어 다문화가족주기변화와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이 부재하다. 따라서 맞벌이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접근과 함께 다문화아동의 학령기 진입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노인 및 취약한 가족돌봄 정책으로는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가족간호휴직의 법적 기반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년부터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간병·육아 등 돌봄서비스 수용에 대응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인증이 확대되고 있다. 노인돌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부터 노인장기요양 등급자외에 대한 돌봄서비스로 거동불편 노인에게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으며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및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2011년부터 장기공

공 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 3%)를 고령 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가족돌봄 정책은 제도적인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다양한 가족돌봄 욕구 및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가족부양관의 약화와 함께 소가족화·핵가족화에 따른 가족부양 체계의 불안정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가족부양 환경기반 마련을 위해 실효성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나. 가족정책과제

결혼 및 출산 등 가족형성과 가족가능 제고를 위 해 가족가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가족생 활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환경 조성과 함께 건 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통해 가족가치를 발견하는 문화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결혼생활과 가족 제도에서 각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족문화 가 변화되어야 한다. 여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우리나라 가족문화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 다. 성 평등적 가족문화와 복잡한 가족관계를 완화 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가족문화가 조성 될 필요가 있다.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개선하고 성 평등적 부부관계 확립을 위해 가족유형 및 가족주 기별로 부부관계, 부모역할 관련 교육·상담프로그 램을 개발 · 보급한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모델 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양성 평등 적 부부관계 인식을 개선한다. 부부간의 평등한 역 할공유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 고 여가시간을 부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여가시설 이나 사회교육기관 등을 통해 부부공동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와 함 께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활성화, 근로시간의 축소, 남성의 육아참여기회 확대, 그리고 인식개 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 구된다.

서민·중산층·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촘촘한 자녀양육지원 체계마련이 요구된다. 호주의 경우 아동보호 및 발달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조 기중재 및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부모와 가족의 아동 양육을 지 원하기 위해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발달을 구축하 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 히 공공 민간, 이용 연령, 프로그램 및 이용시간 등 에 따라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돌봄 망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 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양육지원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양육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 화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한다. 양육 비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출이 크므로 취 학자녀와 대학생의 양육지원을 위한 사회적 지원 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다.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가족기 능 회복 및 자립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 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및 생애주기별 가족관계를 강화한다. 전문기관 중심으로 정신건 강 상담 및 치료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형성단계부터 자녀출산 및 양육, 가족축소단

계에 이르기까지 가족주기 단계별로 교육 및 관계 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생 애주기별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 정체성발달을 위 한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을 확대한다. 한편, 실직 및 차상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해 구직관련 정 보제공부터 취업·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생계급여보조와 자녀돌봄의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부모 취업+돌봄 패키지 프 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자녀양육비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을 실효성 있는 수준 까지 제고한다. 한부모가족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사례관리사업을 강화한다. 상담-취업교육-창업 등 다각적인 지역자원 연계망을 구축하고 이를 수 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17개소에서 점차 확 대하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맞춤지원으로 결혼이민자의 입국시기, 한국어능력, 자녀유무 등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를 통한 개인별 맞춤지원과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실시 및 자조모임을 활성화한다. 다문화 맞벌이 부 부 및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의 지원을 강화한다. 맞벌이 부부 다문화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의 실증적 통계 를 생산하여 정책기반을 마련한다. 다문화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언어 및 학습발달 적응을 위해 언어교육 및 이중언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 고, 예비학교 및 레인보우 스쿨(Rainbow School) 등 다문화아동 학교사회 초기적응 인프라 기반을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다문화 아동 양육정보 제공 등 찾아가는 부모교육서비스를 지원하여 정보접근 성을 제고한다.

가족부양은 부모의 신체·수발 등 도구적 지원은 공적부양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의 욕구와 경제력 에 따라 사적부담을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 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노후준비지 원법' 시행(2015.12)에 따라 개인의 노후설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진단·상담·교육·연 계·사후관리 등의 프로그램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특히 연령대, 경제 적 수준, 필요 욕구 등 개인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부모 의 경제적 자원 강화를 위해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고령층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동고용정책을 활성화 하고, 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들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들이 노년기로 진입하기 이전에 조기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 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합리적·균 형적인 부모부양 문화 정착을 위해 가족 욕구를 반 영한 가족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방안의 도입을 모색하고. 가족돌봄 제공자를 위한 휴식이나 쉼터 서비스 등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원망도 확충되 어야 할 것이다.

3.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및 정책과제

가. 현황과 문제점

저출산의 영향으로 아동인구 감소현상이 지속적 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에 전체인구의 19%인 907만명을 차지했던 0-18세 아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전체인구의 15.9%인 81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아동인구의 감소는 보육·교육, 고용, 주거, 산업 등의 분야에서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부족에 따른 노인부양 부담의 증가 등을 초래,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1)³⁾. 이처럼 거대한 인구·경제·사회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사회의 인적자원인 아동인구의 건강한 육성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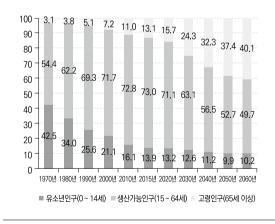
우수한 인적 자본의 형성과 미래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동정책은 아동 일반을 대상 으로 하는 전체 아동의 기본적인 역량 강화정책과 취약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보장과 사회적 지원정책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 다.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이후 과거 40여년 간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은 이른바 '요보호 아동'을 대 상으로 한 잔여주의적 아동보호정책 중심으로 추 진되어 왔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아동복지에 대 한 개념이 보다 보편주의적 아동권리 중심으로 확 대되어 가고 있으며 2015년 아동분야에서 처음으 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계획인 제1차 아동정 책 기본계획(2015년~19년)을 수립하게 되었다.

상술한 아동복지정책의 여건변화를 기초로 하여, 현재 아동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피해 아동, 가정 밖, 학교 밖

³⁾ 관계부처 합동(2015). 제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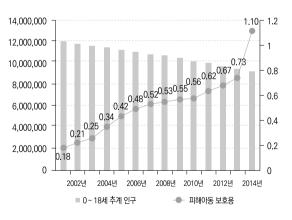
아동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아 동보호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동을 위 한 사회적 보호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학대피해 아 동을 비롯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범 위와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학대피해아동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의 수 뿐만 아 니라 원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 즉 요 보호아동의 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아동인구 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아동 보 호율4)은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의 시행에 따른 결과 로 아동학대 사례 피해아동 보호율은 50% 급증하 였다(그림2). 2014년 기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에 의해 보고된 아동학대건수는 10.027명으로 학 대로 신고되어 판정된 사례를 기초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사례는 전체 학대건수의 빙산의 일각 에 불과한 것으로. 정확한 학대피해아동의 규모와 실태파악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 대 실태조사는 2011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단 한 차례 이루어졌을 뿐이고. 아동학대의 현황은 지속 적으로 파악되지 많고 있다⁵⁾. 신고체계를 기초로 작동되는 이러한 아동학대보호체계의 한계를 고려 할 때. "신고된" 학대피해 아동 뿐만 아니라. 아동 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입양 등 공적

그림 1. 인구구성비의 변화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 각년도

그림 2. 학대피해 아동 보호율(2001-2014년)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2014)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

⁴⁾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은 당해연도 추계아동인구 (0~17세) 천명당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수를 의미함.

⁵⁾ 아동학대실태조사는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전국 5.051개 가구(저소득층을 표본의 20%로 할당)의 아동과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학 대의 피해와 그 정도 및 학대관련 위험요인을 파학함. 조사결과,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은 25.3%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방임이 15.4%, 정서적 학대는 10.9%, 신체적 학대는 7.1%를 차지했다(보건복지부, 숙명여대 산학협력단(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p.75.)

보호체계를 통한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현황파악도 시급하다. 빈곤 실직, 가족해체, 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비행가출 등으로 시설보호나 가정보호를 받는 요보호아동은 2014년 기준 4,994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수치는 아동대안양육 시설 등에서 보호조치가 완료된 아동에 대해 사후적으로 수집된 보고 자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⁶, 이를 기초로 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기아동의 실질적인 규모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위기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의 개선이 필요하다.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아동 보호체계(Child protection system)가 도입된 이 후 지난 10여년 간 공공성이 결여된 아동보호체계 에 대한 반성과 재편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었으나 사회적 보호망의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개선은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정 내 폭력의 위험에 노 출되어 있는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 입된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신고와 조사에 기반한 보호체계이다⁷⁾. 의심사례로서 신고되는 순 간 아동학대보호시스템은 작동하기 시작하며, 학 대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부모와 아동의 이해가 다투고, 가족과 국가가 아동보호의 책임성을 두고 갈등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신고기반 시스템의 핵심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국가개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 으나, 2000년부터 도입된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

계는 민영화되어 운영되어왔다. 결과적으로 출발 부터 민간위탁된 아동보호체계는 국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위탁되어 실행됨으로써 공공성을 기반으 로 한 아동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은 공공성 결여의 문 제는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뿐만 아니라 입양, 가 정위탁, 그룹홈 등 위기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보호 및 양육시스템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셋째, 아동보호체계의 분절성과 파편성이 현행 아동보호체계에서 근본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문제 이다.

아동보호체계는 학대, 폭력 또는 부적절한 양육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아동에게 기회 의 형평성을 담보하는 사회적 지원체계라고 규정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아동보호체계의 법적·제도적 구축은 아동권리보장과 아동복지의 출발점이자 토 대이다. 그러나.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학대 및 위 기아동의 발굴 또는 신고 · 접수. 보호조치의 판정 과 사후관리에 이르는 아동보호의 전 과정에서 체 계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대상별 정책분단 의 칸막이가 중앙정부 부처별로 존재하여, 아동을 전담하는 보건복지부, 청소년 · 가족을 전담하는 여성가족부, 학교 내의 아동문제를 전담하는 교육 부 등으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고, 유기적으로 통합 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아동복지 전달체계 전 반에서도 이런 분절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⁶⁾ 박세경 외(2014). 아동보호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4.

⁷⁾ 이봉주(2005). 한국 아동보호체제의 딜레마: 신고·조사와 서비스 기능 간의 역할 갈등. p.7.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대 안양육기관 등이 각각 별도의 전달체계를 구축하 고 있으며 개별서비스 전달체계 간의 연계나 통합 적인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분절화 된 아동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부천아동 학대 사건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던 아동학대 사 례이며, 관계부처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속적 인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인구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은 정치ㆍ경제ㆍ사 회적 힘의 역관계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주변부적 인 존재로서 간주되어 왔으며 아동에 대한 사회 적 투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2012년 기준, 아동·가족 분야 공공지출은 GDP대비 0.8%로, OECD 평균 2.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집단별 사업 불균형이 심하 여 정부예산지출의 대부분이 0~5세 아동을 위한 보육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보육을 제외한 아동 가 족복지 지출예산은 현저히 낮아져 0.1% 미만으로 현저히 낮아진다⁸⁾. 게다가 2005년 아동복지 관련 사업 예산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나 아동정책에 따라서 지역별 아동복지 지원 및 자원의 할당이 달라져 지 역 간 아동복지 수준이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모든 아동에게 공평하고 동등한 발달의 기회 를 제공해야 한다는 아동기본권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거주지역에 따른 서비스 아동복지 서비 스의 차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극

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예산의 중앙환원을 다시금 고려해볼 필요 가 있다.

나. 아동복지정책과제

2015년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계기 로 아동복지정책은 기존의 정책중심이었던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선별적인 아동정 책으로부터 보다 보편적인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 다. 아동의 관점과 권리를 기초로 한 아동 삶의 질 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아동일반을 대상으로 하 는 보편주의적 아동복지정책의 수립과 추진의 기 초가 될 수 있다. 즉, 정책공급자 중심으로 접근 설 계되어 왔던 기존의 제반 아동복지정책을 수요자 인 아동의 권리를 기초로 전환하는 것이 아동정책 의 수립과 접근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를 위해서는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 의 이해와 관심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과 원칙에 입각하여 아동복지정 책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 보다 시급한 것이 아동복지 예산의 확충이다. 아동 복지예산과 관련하여,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의 높은 경제발전 정도에 걸맞는 아동복지예산의 확충 및 빈곤 혹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전략적인 예산방안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아동가족 공공부분 예산 중 보육을 제외한 아동복지예산은 전체 GDP대비 0.1%에 불과한 현실이고 2016년 아동학대 관련예산은 국비와 지자체예산을 포함하 여 372억 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⁹.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범정부 종합대책이 마련되지만, 실천력을 가지고 추진되고 아동의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체계가 작동할수 있는 적정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더구나 2014년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국고환수 이후 아동학대 예방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항목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에서 충당되고 있다. 아동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국가예산의 확보없이 학대예방대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취약계층 아동의 삶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과 이를 기초로 한 정책형성이 필요하다. 예컨대, 올해 실시 예정되어 있는 빈곤아동 실태조사는 지금까지 전국적 차원의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했던 바, 빈곤아동의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이에 근거한 아동빈곤대책의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학대아동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학대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폭력과 사회적 배제로부터 취약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사회적인 안전망의 재편과 강화가 시급하다. 아동보호에 있 어서 국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아동대 상별로 나누어진 중앙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아동 및 청소년의 생애주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서비스와 청소년보호서비스가 통합연계 운영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¹⁰⁾. 또한, 분립되어진 개별 아동보호체계 및 양육체계들을 총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함으로써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체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의 조기개입과 예방, 신속한 대응과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아동학대의 사전예방시스템과 관련하여 현 재 시행중인 영유아건강검진을 활용한 아동의 의 료방임사례를 발굴·관리하고. 빈곤을 비롯한 다양 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신 고기반의 아동보호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또 는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한 아동방임 및 학대의 조기개입 및 예방효과는 검증 된 바 있으며, 아동학대 사례 발굴의 궁극적인 목 적은 조사와 처벌이 아니라 취약한 위기상황의 가 족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아동학 대의 비극적인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두어져 야 할 것이다.

아동 및 기족 지원체계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 체 아동복지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지

⁹⁾ 한겨레(2016). "아동학대예산, 복지부 공식항목엔 없다". 2016년 1월 21일.

¹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관련 부처들이 산재해 있고 부처 간 효율성과 연계성이 떨어져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립된 행정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530)

자체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의 업무과중과 순환보직 에 따른 잦은 인사이동은 아동복지, 특히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조건으 로 작용하고 있다. 순환보직제도의 예외적용 또는 개선 등을 통하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지 않고 아동과 가족보호에 있어 국가의 공공성과 책무성 의 강화를 기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또한 보호 대상아동의 배치결정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해야 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의 회 복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설 치된 지역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명무실 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및 위기아동에 대한 예방 적 조기개입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과 자원을 기초로 하는 취약한 위기가족에 대한 사회 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신고를 기반으로 한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한계는 광범위한 아동보 호의 연속성으로부터 위기도가 낮지만 사회적 지 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원과 서비 스는 배제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아동보호중심체 계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활동과 자원을 기초로 하여 아동학 대 뿐만 아니라 학대의 위기요인으로 작용하는 빈 고, 실직, 가족해체 등의 다차원적 발달위기에 직 면한 아동과 가족에게 사회적 지원과 보호를 제공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신고를 기초 로 작동하는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사후대응 중심 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보호체계의 외연을 학 대아동 뿐만 아니라 위기아동 전체를 포함하는 것 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궁극 적으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 다고 했던 지역공동체 중심의 아동보호망의 회복 을 의미한다.

4.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 및 과제

가. 현황과 문제점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¹¹⁾에 의하면,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은 소득보장(38.5%), 의료보장 (32.8%), 고용보장 (8.5%)의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은 실정이며, 이는 결국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 제로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3.5만원으로 전국가구의 평균 소득인 415.2만원의 53.8% 수준 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장애인은 비장애인이면 지 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 즉, 장애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16.4만원 인 것 으로 나타나 어려운 가정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요 인이 되고 있다.

한편, 전체 국민의 취업자 비율 60.9%에 비하 여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6%로서 전체 국민의 60.1% 수준에 있다. 또한 장애인 실업률은 6.2% 수준으로 전국 실업률 3.5%에 비해 1.8배 높은 수 준에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소득보장 욕구는

높으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득수준 및 낮은 경제 활동상태를 보이고 있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소득보장 및 고용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고 하겠다.

장애인은 사회활동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수행할 때 장애인의 32.2%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 제공자는 가족구성원이 81.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의 일상적 외출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도 39.8%로 높은데,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이유로는 버스 택시이용 불편 61.0%, 지하철 엘리베이트 등 편의시설부족 17.2%,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 교통수단 부족 14.3%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다'가 27.4%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70% 이상의 장애인은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차별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소득보장, 경제활동, 사회활동, 일상생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전히 차별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주요 현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전통적 욕구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장애인 활동지원 및 돌봄서비스 등 개인생활보조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수요 증대, 성년 후견제 등 법률적 지원서비스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 이동권, 주거보장, 가사지원서비스, 문화생활 등에 대한 욕구도높은 수준에 있으며, 따라서 늘어나는 장애인 복지수요에 따른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는 장애의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에 입각하여, 특정 질환 또 는 특정 기능의 손상 중심으로 판정하고 있어서 개 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 어려움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의료적 판단 외 에 일상생활수행능력, 근로능력 또는 소득활동능 력 및 개인의 욕구와 환경적 맥락까지 고려하여 장 애를 판정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현행 장애인판정 체계로는 장애인들의 복지 수요에 대한 객관적·종 합적 판단이 곤란하며, 이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는 결과를 초 래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평생교육권 보장,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탈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거주 지원 등 새로운 요구가 등장하여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현행 장애인복지 전 달체계는 분절적이고 나열적이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이 느끼는 체감 수준은 매우 낮으며, 새롭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서비스 수요자의 불만이 가 중되는 등 현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급증하는 장애인구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장애인의 기본적 삶의 보장 문제 해결과 더 불어 최근 분출되고 있는 새로운 욕구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 있다. 그러나 자원배분에 있어서 사각지대와 중복이 공존하는 기존 정책의 틀 내에서 정책 확대만으로는 이러한 과제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새로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입각해 지속가능한 종합대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기본 방향

최근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분리와 보호, 재 활 패러다임으로부터 자립, 인권, 사회통합을 지향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 께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을 시행하 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의 각 단계별로 소득, 의료, 주 거, 고용, 기타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 는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라. 정책 과제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판정도구의 개발 등 장애판정제도 검토, 장 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급여제공을 위한 인정조사표 개발, 장애인 연계서비스 제공 사 업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 분석이 이루어지 고, 이를 종합화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간의 관계성을 재검토하고, 지역사회 거주시설 개편 및 지역사회 이용시설과의 연계 강화,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과 기존 시스템과의 관계 설정,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 당 등 소득보장 문제, 장애인 직업재활 문제와 고 용문제, 장애인 인권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 러한 연구들을 종합화하여 큰 틀에서 장애인복지 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종합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은 각 분야별 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활 동지원제도 분야만 하더라도 인정조사표의 문제, 활동보조인의 근로자성 문제, 장애인 입장에서의 시간 부족 문제, 활동보조인의 임금 확보 문제, 중 개기관의 활동보조인 확보 문제 등 매우 다양한 문 제가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각 분야별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 는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 련하되, 이 모두를 큰 틀에서 종합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에서 큰 틀에서의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각 분야의 발전 이 제각각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은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에 대한 성과분석 등 중간평가를 실시할 때 같이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는 데 이 역시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편 노력의 하나라고 할 수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장애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달체계의 개편 작업이 이루어져야하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기존 장애인복지 제도와의 관계 설정, 개편 사업 실시를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장애인복지 종합적 개편에 따른 수요 및 소요비용 추계, 그리고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종합적개편에 따른 관리운영체계의 검토 등이 동시에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장애인 복지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혁신적제도 개편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학계, 장애인 단체, 장애인 당사자, 서비스제공기관 관련전문가 등의 단합된 노력이 동반되어야할 것이다.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화되는 가족형태에 대응하여 다양한 가족이 처한 상황과 욕구에 부합되는 맞춤형 지원정책 제공 또한 필요하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학대아동, 방임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의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이들을 보호하는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히 요청된다. 물론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실효성을거두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예산의 확충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방식으로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의 각 단계별필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함께 생활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圖

5. 나가며

본고는 가족·아동·장애인복지 분야에서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2016년에 추진될 필요가 있는 정 책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가족분야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와 혼인율 감소, 그리고 이혼율 증가 등으로 인한 가족기능 약화 문제에 대응하여 가족가치를 확산시키고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